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9. 1. 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액체괴물을 포함한 모든 완구에 유럽기준과
동일한 '붕소기준' 적용중

(경향신문 1.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○ 현재 우리나라도 액체괴물을 포함한 모든 완구에 유럽기준과
동일한 붕소기준(300mg/kg)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○ 1월3일자 경향신문 <액체괴물은 '붕소'괴물 . . . 유럽기준치
최대 7배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☐ 유통중인 액체괴물(완구)에서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붕소가
검출되었으나 국내에는 기준치가 없는 바, 규제기준 마련이 필요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국표원은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상 완구안전기준을 개정('18.12.12.)
하였으며,
 - 2019년 1월 1일부터 액체괴물을 포함한 모든 완구에 대해 유럽
기준과 동일한 붕소기준(300mg/kg)을 적용하고 있음

※ 문의 : 국표원 생활제품안전과 홍순파 과장 (043-870-5450)
/ 이흥균 연구사 (043-870-5452)